

# 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

##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# I. 개요

### 1. 제안 경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: 제1095호
- 다. 제출일자: 2016. 4. 7.
- 라. 회부일자: 2016. 4. 12.

### 2. 제안사유

- 가. 서울재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, 재사용 등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, 재사용·재활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거점 시설로서,
- 나.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비전문 조직의 직영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, 동 분야에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서울재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17.1월~2019.12월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(신규위탁)
- 사업비 : 2016년 79백만원 ※ 2017년 2,306백만원

#### 나. 주요 위탁사무 : 서울재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

- 시설물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- 입주자의 선정·관리 및 입주자와의 협업·협력
-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관련 정보관리, 네트워크 구축 등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필요성
  - 국내 업사이클링 산업은 아직 영세한 수준으로 업사이클 사업자 대부분이 작업공간, 소재, 유통망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업사이클 등 재활용 문화 확산이 필요한 시기임.
  - 동 산업분야의 창조적 인재양성과 산업지원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사용·재활용 문화확산의 거점시설로 건립중인 “서울재활용플라자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업사이클링 등 재활용 분야 전문지식과 인력, 기술 등이 필요
  - 기존 행정조직의 직접 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관련 산업에 특화된 전문조직에 위탁 필요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조의2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79백만원 ※ 17년 2,307백만원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## II. 검토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재활용 산업 육성 및 문화확산을 위해 조성중인 서울재활용 플라자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재활용 산업육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재활용플라자(Seoul Upcycle Plaza)를 조성하고 있으며, 2017년 1월 준공예정임.

- 위 치 : 성동구 용답동250-1 외 2필지
- 규 모 : 지하2층/지상5층, 총면적 16,529㎡
- 기 간 : 2015.01.~2017.01
- 총사업비 : 498억원

공사비 446억원, 감리비 27억원, 설계비 21억원, 시설부대비 2억원, 사무관리비 2억원

- 업사이클(Upgrade+Recycling)은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
  - 세계적으로는 250여개의 업사이클링 기업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로 업사이클링 기업<sup>1)</sup>의 규모가 영세하고, 작업공간, 소재, 유통망 확보, 디자인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1) 업사이클을 표방하는 국내의 사회적 기업의 수가 2007년 단 한 곳에서 2014년 68개로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

- 새활용플라자는 업사이클링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거점시설로서 업사이클링을 포함한 재활용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, 기술 등이 필요한 곳으로 기존 행정조직의 직접 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- 본 동의안은 새활용플라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.

# 관계 법령

## 「폐기물관리법」

제3조의2(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)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(有害性)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,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,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.

⑥ 폐기물은 소각,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